<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베어스타코 BEARSTACO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
|------------|-------------|
| 최초 등록일 | 2024.11 |
| 최종 등록일 | 2024.12.23. |

베어스타코 정보공개서

[디디에프인터내셔널 주식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대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대 | 표 번 호 | | 1533-3365 | 팩 | 팩 스 | | 번 | | 호 | 준비중 | | |
|---------------------------|---|---|-----------|---|------|---|---|---|---|-----|---|---------------|
| 가 | 맹 사 | 업 | 부 | 서 | 가맹본부 | 담 | 당 | 부 | 서 | 전 | 화 | 010-7362-3237 |
|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5 길 15, 501 호(역삼동, 수양빌딩) | | | | | | | | | | | |
| 홈 페 이 지 www.bearstaco.com | | | | | | | | | | | |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 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 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 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 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 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 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 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베어스타코

• 당사 : 가맹사업 (디디에프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베어스타코")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베어스타코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 | 베어스타코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5 길 15, 501 호(역삼동, 수양빌딩) | | | | |
| 디디에프인터내셔널 | 법인 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 | |
| 주식회사 | 2022. 3.31. | 2023. 2. 1. | 이태영 | | | |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전화번호 | | | |
| | 110111-8250427 | 111-88-02679 | 1533-3365 | | | |

2. 최근 3년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 구 분 | 명칭(이름) | 상 호 | | | | 호 | | 주 소 | | | |
|-------|--------|---------------|---|---|---|---|---|-----------|--------|--|--|
| 특수관계인 | 이태영 | 디디에프인터내셔널주식회사 |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5길 15, 501 호(역삼동, 수양빌딩) | | | | |
| (임원) | 유병준 | 영 | 업 | | 표 | 지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32) | | 베 | Ю | 스 | 타 | 띠 | 이태영 | 1533-3365 | 준비중 | | |

3. 가맹본부의 최근 3년 인수·합병 내역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가.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

| 브랜드 명 | 상호 | 상표(서비스표) |
|-------|---------------------------|--------------------|
| 베어스타코 | 베어스타코 00 점 (해당 지역명 표기) | 베어스타코 BEARSTACO |

5. 가맹본부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가.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 근거자료는 [별첨 1] 참조

(단위: 원/VAT 미포함)

| 연도 | 총자산 | 총부채 | 총자본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1 년 | 해당없음 | | | | | |
| 2022 년 | 해당없음 | | | | | |
| 2023 년 | 286,376,987 | 438,856,947 | -152,479,960 | 910,605,259 | -182,497,397 | -182,479,960 |

나. 당사의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가 베어스타코 가맹사업 외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가.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고려어ㅂ | 성명 | 직위 | | 사업경력 | |
|---------------|-----|------|-------------|---------------|-------|
| 관련여부 | 33 | 77 | 기간 | 사업내용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 관련 임원 | 이태영 | 대표이사 | 2023. 4.~현재 | 디디에프인터내셔널주식회사 | 업무총괄 |
| 가맹사업 관련 임원 | 유병준 | 사내이사 | 2024.10.~현재 | 디디에프인터내셔널주식회사 | 경영전반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니저 | 임원- | 수(명) | 지의소/대\ | |
|---------------|-----|------|--------|--|
| 시점 | 상근 | 비상근 | 직원수(명) | |
| 2023년 12월 31일 | 0 | 2 | 4 | |

- 8. 최근 3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해당없음
-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 구분 | 丑刀 | 출원 및 등록 일자 | 출원 및 등록 번호 | 소유자 (출원인) | 등록 만료일 (가맹본부 사용기간) | | | | | | |
|--------------|--------------------|----------------------|--------------------------|-----------------------|------------------------------|--|--|--|--|--|--|
| 상표 (서비스표) | 베어스타코 BEARSTACO | 등록일자 : 2023. 8.21 | 등록번호 : 제4020703210000 | 디디에프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 2033. 8.21. (2033. 8.21.) | | | | | | |
| 권리 범위 | |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범위 이내 사용 | | | | | | | | |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상표 등은 현재 출원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베어스타코 가맹사업 시작일 : 해당없음

직 영 점 시작일 : 2021.12.29

2. 베어스타코의 연혁

|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 | 가맹사업 경영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디디에프인터내셔널 주식회사 | 베어스타코 | 이태영 | 가맹사업 예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5길 15,501호(역삼동, 수양빌딩) |

3. 베어스타코의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 |
|-------|--------|-----------|--|--|--|--|
| 베이스티크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 |
| 베어스타코 | 기타 외국식 | 타코 | | | | |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베어스타코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단위:개)

| TICH | 202 | 1년 12월 : | 31일 | 202 | 2년 12월 (| 31일 | 202 | 3년 12월 (| 31일 |
|------|-----|----------|-----|-----|----------|---------|-----|----------|-----|
| 지역 | 전체 | 가맹점 | 직영점 | 전체 | 가맹점 | 직영점 | 전체 | 가맹점 | 직영점 |
| 전체 | - | - | - | - | - | _ | 1 | - | 1 |
| 서울 | - | _ | _ | _ | _ | _ | 1 | _ | 1 |
| 인천 | - | - | - | - | - | _ | _ | - | _ |
| 부산 | - | _ | _ | _ | _ | _ | _ | - | _ |
| 대구 | - | | | | | _ | - | - | _ |
| 광주 | - | - | | - | | _ | - | - | _ |
| 대전 | - | _ | _ | _ | _ | _ | _ | _ | _ |
| 울산 | - | _ | _ | _ | _ | _ | _ | _ | _ |
| 세종 | - | _ | _ | _ | _ | _ | _ | _ | _ |
| 경기 | - | _ | _ | _ | _ | _ | 1 | _ | 1 |
| 강원 | - | _ | _ | _ | _ | _ | _ | _ | _ |
| 충북 | - | - | - | - | - | _ | _ | - | _ |
| 충남 | - | | | | | _ | 1 | - | 1 |
| 전북 | - | ı | ı | ı | ı | _ | ı | - | _ |
| 전남 | - | - | | - | | _ | - | - | _ |
| 경북 | - | ı | ı | ı | ı | _ | ı | _ | _ |
| 경남 | _ | ı | ı | ı | ı | _ | ı | _ | _ |
| 제주 | - | _ | _ | _ | _ | _ | _ | _ | _ |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베어스타코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 시점 | 연초 | 신규개점 | 계약종료 | 계약해지 | 명의변경 | 연말 |
|--------|----|------|------|------|------|----|
| 2021 년 | _ | _ | _ | _ | _ | - |
| 2022 년 | _ | - | - | _ | - | - |
| 2023 년 | _ | - | - | - | - | - |

6. 최근 3년 베어스타코 외 당사 및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없음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베어스타코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 사업연도(2023 년)에 연간평균으로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산출가맹점 수가 5곳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 000014 [] | | 연간 매출액(단위: 천원,VAT 미포함) | | | | | 산출 |
|----|-----------|-------|------------------------|---------|---------------------|---------|---------|-----|
| 지역 | 2023년 말 | 연간 평균 | · 고 매출액 | 연간 평균 [| 매출액(상한) | 연간 평균 [| 매출액(하한) | 가맹점 |
| | 가맹점수 | 평균매출액 | 3.3m ² 당 | 상한 | 3.3m ² 당 | 하한 | 3.3m²당 | 수 |
| 전체 |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_ | _ |
| 부산 | - | _ | - | - | - | - | _ | _ |
| 대구 | - | - | - | ı | ı | - | _ | _ |
| 광주 | _ | ı | ı | 1 | 1 | ı | _ | _ |
| 대전 | _ | - | ı | ı | ı | ı | _ | _ |
| 울산 | _ | 1 | 1 | 1 | 1 | 1 | _ | _ |
| 세종 | _ | - | ı | 1 | 1 | ı | _ | _ |
| 경기 | _ | - | ı | ı | ı | ı | _ | - |
| 강원 | _ | _ | _ | _ | _ | _ | _ | _ |
| 충북 | _ | _ | _ | _ | _ | _ | _ | _ |
| 충남 | _ | _ | _ | _ | _ | _ | _ | _ |
| 전북 | _ | _ | _ | _ | _ | - | _ | _ |
| 전남 | _ | _ | _ | _ | _ | - | _ | _ |
| 경북 | - | - | ı | - | - | - | _ | _ |
| 경남 | - | _ | - | _ | _ | _ | _ | _ |
| 제주 | - | _ | _ | - | - | - | _ | _ |

8. [베어스타코]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베어스타코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해당없음

10. 직전 사업연도(2023년)의 당해 가맹사업과 관련한 광고·판촉비 지출 내역

해당없음

11. 가맹금 예치 기관

| 예치기관명 | 지점명 | 주소 | 전화번호 |
|--------|-------|--------------------|-----------|
| KB국민은행 | 서잠실지점 | 서울특별실 송파구 석촌호수로 92 | 1599-9999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에 작성하여 KB국민은행에 계약 체결일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귀하가 KB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예치하는 방법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디디에프인터내셔널 주식회사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皿.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形)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베어스타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 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최초 가맹금

| 구분 | 내역 | 금액(단위:원/ VAT 포함)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 가맹비 | 가입대가 영업표지 사용 부여의 대가 노하우제공의 대가 개업지원의 대가 기타 자료제공의 대가 | 15,000,000 |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을 위 하여 소요되는 소 멸성 비용 |
| 교육비 | 개점 전 교육비 | 5,500,000 |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요 되는 소멸성 비용 |

나. 보증금

| 구분 | 내역 | 금액(단위:원/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
|---------|--------------|-----------|------------|-------|
| 十七 | Ч≒ | VAT 포함) | 인원소인 | 없는 사유 |
| |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 | 계약 종료일로부터 | 미납 채무 |
| 계약이행보증금 |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 F 000 000 | 30일 이내에 잔존 | 가 보증금 |
| |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 5,000,000 |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 을 초과하 |
| | 제공하는 금액 | | 정산 후 반환 | 는 경우 |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구분 | 금액(단위:원/VAT 포함) |
|-----|-----------------|
| 가맹비 | 15,000,000 |
| 교육비 | 5,500,000 |
| 보증금 | 5,000,000 |
| 합계 | 25,500,000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하는 경우 상기 내역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내용

(49.5m² 기준/단위:원/VAT 포함)

| | | | | • • • | |
|---------|------|------------|---------------------|-------|------------------|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3.3m ² 당 | 지급기한 |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
| | | | 금액 | | 인원들기 자유 |
| | | | | | 발주 전 |
| 인테리어 | 가맹본부 | 41,250,000 | 2,750,000 | 개별계약 | 소요비용 공제 |
| | | | | | 후 반환 |
| 간판 | 가맹본부 | 5,500,000 | _ | " | " |
| 설비 및 집기 | 가맹본부 | 16,500,000 | _ | " | " |
| 초도물품 | 가맹본부 | 1,650,000 | _ | " | " |
| 합계 | _ | 64,900,000 | _ | _ | - |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디자인제공, 도면제공, 관리감독, 검사의 대가로 <u>3.3m² 당 330,000 (VAT 포함)</u>를 위 비용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위 표의 3.3m² 당 금액은 49.5m² 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술적으로 나눈 금액이며, 실제로는 면적에 비례하지 않거나 면적에 상관없이 비용이 같거나 적은 등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별도비용: 철거, 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마.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 입지선정의 주체 | 입지 선정의 기준 |
|----------|---|
| |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
| |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
| 가맹희망자 |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 |
| | 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
| | 3)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

4)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입니다.

바.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특별한 기준 없음 |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만 19 세 이상일 것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관계 법령 준수 |

사.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 귀하의 가맹금 납부 절차

귀하는 계약 체결 시에 가맹금을 일시에 전부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가. 영업을 시작한 이 후 비용의 부담

| 구 분 | 내 역 | 지급 상대방 | 금 액(단위:원 /VAT 별도) 또는 산정기준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 로열티 |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의 대가 | 가맹 본부 | 매월 월 매출액의 2% 에 해당하는 금액 | 매월 10 일 | 영업표지 사용기간에 따른 소멸성 비용 |
| | 수시 교육 | 가맹 본부 |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 개별 청구 | 실비로 반환 안됨 |
| 교육비 | 보수교육 | 가맹 본부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 개별 청구 |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음 |
| 광고 분담비 |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 가맹 본부 | V.8. 광고 및 판촉 활 동 참조 | 개별 청구 |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
| 판촉 분담비 | 판촉 | 가맹 본부 | V.8. 광고 및 판촉 활 동 참조 | 개별 청구 |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
| POS 사용료 | 시스템 사용료 | 협력 업체 | 별도 계약 | 개별 청구 | 후불로 반환 안됨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간판 및 인테리어 시공 비용 | 계약자 | 가맹본부 분담 부분 제외 나머지 모두 | 개별청구 | VII-1 참조 |
| 지연 이자 | 금전지급의무 지체에 따른 대가 | 가맹 본부 | 연 15% | 개별 청구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여서 반환 안됨 |

나. 구입강제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2023년도 가맹점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 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 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 구분 | 금액 (단위:원/VAT 포함)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갱신비 | 해당없음 | | | | |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 | 비고 |
|--|--------------------|
| 약승계 여부 | -1- |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제16 | 계약서 제34조 |
| 조 제2항에 따라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
|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비고 |
| 가맹본부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서 제10조 제3항 |
|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비고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반환되는 가맹금의 범위는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서 제16조 제3항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양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구분 | 내역 | 금액(단위:원/ VAT 포함)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 양수 가맹비 |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양수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 7,500,000 |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 는 소멸성 비 용 |
| 교육비 | 양수 전 교육비 | 5,500,000 |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 성 비용 |
| 계약이행보증금 |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 5,000,000 |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 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라.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1)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계약 종료 후의 조치 | 관련 계약조항 |
|--|---------|
|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 .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 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과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지체 1일(日)당 금삼십만원 (₩300,000원)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38조 |

베어스타코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18조 제3항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 . 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제1항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 ③제1항의 철거 .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합의해지 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 |
| ⑤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원 . 부 재료 등의 중에서 완전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공급 가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 | 제28조 제5항 |

2)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가. 귀하가 베어스타코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 원재료.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환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시 강제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품목 중 권유 품목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되는 경우 구입이 강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추가·변경·삭제·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해 브랜드와 관련하여 2023년에는 가맹점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당해 브랜드와 관련하여 2023년에는 가맹점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가. 당사는 베어스타코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그에 대한 알선의 대가는 2023년 거래한 매장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나. 당사가 베어스타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2023 년 내역은 거래한 매장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상품 • 용역명 | [별첨3] 참조 |
|----------|---|
| 711230 | 상기에 기재된 상품·용역(자세한 사항은 오픈전에 서비스명 등으로 제공) 이외의 상품·용역을 제공은 당사의 승인없이 취급할 수 없음 |
| 위반시 책임 | ● 1회 위반: 구두 경고 ● 2회 위반:1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회 서면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
| 비고 |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

- ☞당사는 베어스타코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 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 니다
- ☞상기 표상의 상품 및 용역에 대한 사항은 경영환경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거래상대방(고객)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미성년자 | 주류 및 판매금지 상 품 | 거래상대방 별로 기 |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 | |
| 다른 가맹점 등 소 비자 외 제3자 | 가.의 상품ㆍ용역 | 재된 상품·용역은 판매할 수 없음 | 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 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상품 • 용역명 | 권장가격(단위: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 위 3-가 참조 | 위 3-가 참조 | 변경 시 서면 또는 홈페이 | |
| 게 3 ⁻ 가 참소 | 게 3 ⁻ 가 삼소 | 지 등으로 공지 | _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가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4. 영업지역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중절인 집중 집기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 타코 전문점 | 베어스타코 | _ | |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합의 없이 당해 베어스타코와 상기 기재된 범위와 같은 동일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 ☞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상기와 같습니다.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설정기준 | 설정방법 |
|--|----------|
| 1.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반경 1KM 기준 | |
| 2. 전 1.의 영업지역을 정함에 있어서 대형 쇼핑몰(가든파이브, 타임스퀘어,스 | |
| 타필드 등), 백화점(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대형마트(이마트, 롯 | 별지에 영업지역 |
| 데마트, 홈플러스 등), 공항, 놀이공원(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대형병원, 공항 | 丑人 |
| 등 그 시설 자체만으로 영업지역(독립상권)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 | |
| 지역 | |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 | |
| 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 |
|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 | 당사 담당팀 검토 → <mark>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mark> |
| 히 변동되는 경우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에 동의 여부 회신 |
|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 → 가맹점사업자에게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 |
|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서면 통지 → 가맹점사 <mark>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mark> |
|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 | 업자 동의 → 영업지역료 |
|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 변경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인정되는 경우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상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 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기와 같습니다.]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영업지역 밖에 고객에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관련 계약조항 |
|--|----------|
|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 |
|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또는 가맹점사업 | |
| 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 | 계약서 제12조 |
| 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 |
| 행위 | |
|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 게아시 제40조 |
|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계약서 제12조 |
|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 영 | |
| 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 | 계약서 제12조 |
| 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

-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사.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연도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3 | 0% | 100% | 0% | 0% |

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단위:%)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 0% | 0% |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기간

베어스타코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u>체결일로부터 [2]년</u>입니다. 다만, <u>갱신시에는 [2]년씩</u>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 순 서 | | | | |
|-----|---|--------------|--|--|--|
| 1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 |
| 2 |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 |
| 3 |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 |
| 4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 ① +15일 이 | | | |
| | (예→B, 아니오→A) | 내 | | | |
| (5)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 | | |
| 6 |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 | | | |
| | (예→B, 아니오→D) | | | | |
| 7 |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 D-190 D-00 | | | |
| | (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 |
| 8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 D-60일 이전 | | | |
| | (예→E, 아니오→A) | | | | |

베어스타코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갱신시 계약기간 [2]년) | D-day |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 |
|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
|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 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 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 갱신거절 사유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항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37조1항1호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 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제37조1항2호 |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 면허 .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37조1항3호 |
|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 지 않은 경우 | 제37조1항4호 |
|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제37조1항5호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37조1항6호 |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사유 및 절차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항 | |
|---|----------|--|
| 가맹점사업자가 2 회 이상 원 . 부재료, 교육비, 가맹비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 제38조1항1호 | |
|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 제38조1항2호 | |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 제38조1항3호 | |
|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 제38조1항4호 | |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38조1항5호 | |

|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영업양도, 승계, 담보제공, 사업자위치변경을 한 경우 | 제38조1항6호 |
|---|-----------|
| 영업상 비밀공개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을 한 경우 | 제38조1항7호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 제38조1항8호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38조1항9호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23 조 제 6 항에 의한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개량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제38조1항10호 |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공급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 제38조1항11호 |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는 경우 | 제38조1항12호 |
|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서비스명 등), 판매방법,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 제38조1항13호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 제38조1항14호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제38조1항15호 |

[☞]당사는 상기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의 즉시 해지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항 |
|--|----------|
|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제38조2항1호 |
|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제38조2항2호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38조2항3호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 | |
| 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제38조2항4호 |
|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38조2항5호 |
|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해지 사유 위반으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 제38조2항6호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제38조2항7호 |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 제38조2항8호 |

|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제 38 조 2 항 9 호 |

마.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 생 | | | |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 |
| 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 |
| 신규가맹계약 조건 | 영권 이전 완료 |

-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행, 위탁 등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기타 의무사항 |
|----|-----------|-------|----|---------|
|----|-----------|-------|----|---------|

| 상속 | 상속인 사후 통지 시 | 모든 권리의무 |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 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 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 권 상속 완료 | | 및 | 교육비 |
|------|-------------|-------------------------------|--|------------|---|-----|
| 대리행사 | 본부 승인 시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 의 권리의무 | | 교육수료 지급 | 및 | 교육비 |
| 업무위탁 | 본부 승인 시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 의 권리의무 | | 교육수료 지급 | 및 | 교육비 |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가. 경업금지의 범위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
|------------|--|
| 타코 전문점 |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국내에서 베어스타코와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
| 11:00 ~ 22:00 | 매주6일 이상(명절 제외)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
|----------------------------|
|----------------------------|

[☞]상속,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 |
|--------------------------|---------------------------|
|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구분 | 광고 성격 부담비율 | | 분담절차 | |
|------------------|-----------------------------|------------------|-----------------------|---|
| | 9 T 9 J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
| | 브랜드 및 상품광 고 | 광고비의 50% | 광고비의50% / 가 맹점사업자수 | 광고 계획 공고→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가맹점부담액 통지(광고1개월 전)→ |
| 공동광고 | 브랜드 및 상품광 고와 가맹점모집광 고 | 광고비의 70% | | 통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 납입 * 광고참여 결정 시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
| | 가맹점모집광고 | 100% | _ | - |
| | | 기획비용부담 | 제작비용부담 | 행사 계획 공고- 가맹점 부담액 제시- 행 |
|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짐 | 행사에 따라 달라 | - | | 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
| | 짐 | 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 | *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 |
| | | | | 점 사업자의 70%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

[☞]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 관련 계약조항 |
|---|----------|
| ⑤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 |
| 가맹점사업자는 광고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 계약서 제24조 |
|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⑤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판촉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계약서 제25조 한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 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달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영업비밀 보호 | 관련 계약조항 | |
|--|----------|--|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 | |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 계약서 제2조 | |
|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 |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은 계약기간은 | 계약서 제39조 | |
|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 |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 | | |
| 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 |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 | 관련 계약조항 |
|---|-------------|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일방적 해지·중단· | |
| 종료 등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중지된 경우에는 손해배 | 제38조 |
| 상과는 별도로 아래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3항 |
| : 1M2당 X ₩10,000 X 계약기간 잔여월수 | |
|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 |
|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 .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 | |
| 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과 매뉴얼 및 | 제39조 제1항 |
|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 | |
| 여야 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지체 1일(日)당 금삼십만원 | |
| (₩3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할 경 | |
| 우, 계약 기간 중에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 | 제40조 제4항 |
| 벌로 금오천만원(₩50,000,000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 All 18 |
| 당해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서에 기재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 규정 이외 상대방 | 제42조 |
| 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 제1항 |

베어스타코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 | |
| 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18조 제3항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 | | |
| 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 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 제42조 제2항 | |
| 받을 때까지) 제1항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제16조 제2항에 의 | | |
| 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 1. 788 IL 24 | | | |
|-------------------------|---|--------------------------|-----------------------|
| 구 분 | 내 용 | 소요기간 | 비고 |
| 합계 | | 30~40 일 |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준비중).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 - | |
| 1 차 상담 |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 | |
| 정보공개서 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정보공개서 제공 14(7)일 이후 계약 | |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계약 체결 14일 전 | |
|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 1 일 | IV.가맹점사업자의 |
| 점포 계약 |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 필요시 실시 | 부담 1. 영업개시이전 부담 |
| 점포실측/설계 |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 3 일 | 금전지급 방법 참조 |
| 도면 작성 |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 3 일 | |
| 인테리어 공사 |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15~25 일 | |
| 기자재 및 소품설치 |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3 일 | |
| 교육 | -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 5 일 | |
| 오픈 |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결정) 오프닝 행사(담당자 판단) | D-day |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 분쟁의 해결 | 관련 계약조항 | |
|---|----------|--|
|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 | | |
| 결이 되지 않는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 | |
|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 계약서 제42조 | |
|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 | |
|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분담비율 및 구제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
| 점포환경개선 사유 | >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
| | |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 | > | 간판교체 비용 |
| | >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 |
|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 | 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 |
| | | 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 | >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 >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 | >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
| | |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
| |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
| | |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 |
| | | 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 |
| 지급 절차 | | 본부 부담액을 지급 |
| | > | <분할지급 시 절차> |
| |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
| | |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 |
| | | 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 |
| | | 내, 총 부담액의 30%,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총 부담액의 |
| | | 40%) |
| | >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
| 비용 보다 페이 비오 | |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 |
| 비용 부담 제외 사유 | | 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
| | | 환수 가능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

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시에 가맹본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지원항목,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의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은 통상적인 가맹본부의 가맹점관리, 교육, 통제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되며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신용 제공 등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 제공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 | 회사 소개, 점포운영, 기기사용 | 합 | 기메게야 뒈겨 중 개저 저 | | |
| 신규 교육 | 법, 발주 및 입금 방법 등 가맹점 | 실습교육 |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점 전 까지 | 필수 교육 | |
| | 운영에 필요한 교육 등 | 집단 강의 |)/[A] | | |
| 수시교육 | 가맹점의 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 실습교육 | 교육실시 7일 전에 교육시 | | |
| | 가맹점운영 사항 등 | 집단 강의 | 간 및 장소 등을 통지 | 필수 교육 | |
| 보수교육 | | 실습교육 | 교육실시 7일 전에 교육시 | | |
| | 가맹점관리 및 운영 등 | 개별 강의 | 간 및 장소 등을 통지 | 필수 교육 |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단위:원/VAT포함) | 비고 |
|-------|------|----------------------------|-----------|
| 신규 교육 | 5일 | 5,500,000 | 최초 계약시 이수 |
| 수시 교육 | 개변청이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 피스시 시시 |
| 보수 교육 | 개별협의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 필요시 실시 |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와 종업원입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사 유 | 불이익 |
|---|-----------|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의 해지 |
|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의 갱신 거절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업 이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 개시 승인 거부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1 | 서울 | 강남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7길 22, 1층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8 개월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
| |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
| 528,485 | 기재한 것입니다. |
| | *직영점(1 개/강남점) 운영기간 8 개월을 1 년으로 |
| | 환산한 예상 매출액입니다. |

[별첨1] 재무현황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가맹점의 구입강제품목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당사가 제공하는 품목이 권유 품목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영업표지가 삽입된 제품은 강제함
- ☞ 상기 공급상품 및 내용은 경영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첨 3] 상품용역 (베어스타코 메뉴판)

| SIDE & SAUCE | | | | DRINKS | |
|--------------------------------------|----------|----------------------------|-------|--|-------|
| ************ | ww | ********** | MW | ************* | MM |
| NACHO CHIPS & SALSA | 4.500 | GUACAMOLE 과카폴리 | 4.500 | <jarritos> GUAVA. MANGO. LIME. PINEAPPLE. GRAPE FRUIT</jarritos> | 4.500 |
| CHILI CHEESE NACHOS 나초심하십리본 가르네치즈 | 8.000 | CHILI CON CARNE | 3,500 | (하리트스) 구야바 당고, 라임, 파인애을 자동 370ml COKE / COKE ZERO / PEPSI ZERO LIME 교카급라, 코카급라르토, 팬시제르카인 355ml | 2.000 |
| SEASONED FRIES 명념강자취감 | 5.500 | SAUSAGE AMAI ZDOS | 5.500 | SPRITE / FANTA ORANGE / DR.PEPPER 스프라이트, 합성사이다. 현타오랜지, 탁터리비 355ml | 2.000 |
| CHILI CHEESE FRIES 갑자튀김속합리콘 기료네워츠 | 9.000 | SAUSAGE & CHILI CHEESE | 8.500 | DOS EQUIS Go Bears | 6.500 |
| BUFFALO WINGS 4,5 | 00 8.500 | CHANTRO / TORTILLAS / LIME | 1.000 | CORONA IBU NAS | 6.000 |
| ONION RINGS | 6.000 | MILD SALSA VERDE SALA | 500 | TERRA / KELLY / CASS 테라웨리카스 범택주 | 5.000 |
| SHRIMP RINGS | 5.000 | SOUR CREAM HOT KETCUP | 500 | JINRO / CHAMISUL / CHUMCHURUM 전보이즈텍 참이술,처음처럼 | 4.000 |
| 쉬립프 웹 Spcs | | CHIPOTLE MAYO NACHO CHEESI | | HEINEKEN Mojida dika Soomi | 5.000 |
| CREAM CHEESE BALLS 注稿中本語 5pcs | 5.000 | HOT SAUCE JALAPENO AIOLI | | TERRA / KELLY 暗花 盟司 战争中 500ml | 4,500 |
| 재료 추가 및 제외, 음식 것팅 등 | KRII ON | 배달 및 포장은 좌측 옆든 | 50 | BEARS (TACO | |

| OUESADILL | | ENCHILAD | | CHIMICHAI | |
|---|----------------------|---|--------------------|---|---------|
| MOZZA QUESADILLA 모파 제사디아 | 10,000 | CHICKEN ENCHILADA 치킨 엔립라다 | 12.500 | CHICKEN CHIMICHANGA 시킨 처마참가 | 12.000 |
| CHICKEN QUESADILLA | 11.500 | BEEF ENCHILADA 비표 연설라다 | 13,500 | BEEF CHIMICHANGA 🌚 비프 치미참가 | 13,000 |
| BEEF QUESADILLA HIE REACTOR AVOCADA QUESADILLA | 12,000 | PULLED PORK ENCHILADA 목도로크 영화라다 🏠 | 14.000 | AVOCADO CHIMICHANGA 아보카도 치미한가 | 13,500 |
| 아보카도 퀘사다아 PULED PORK OVESADILLA 플트포크 퀘사디아 | 12 ^{.500} | AVOCADO ENCHILADA 아보카도 앤틸라다 | 14,000 | PULLED PORK CHIMICHANGA 용도포크 치미향가 | 13,500 |
| SHRIMP QUESADILLA 위험프 웹사디아 | 13.500 | SHRIMP ENCHILADA 여행프 앤칠라다 | 15.000 | SHRIMP CHIMICHANGA 위럼프 치미엄가 | 15,000 |
| 소스추천 과학물리, 나초치즈, 사워크림, | 아이움리 | 소스추천 핫소스, 사위크립, 나/ | 토치즈 | 소스추천 마일드살사, 베르테살사, 사위크 | 림, 아이올리 |
| 수저/냅킨/비닐장갑 등 홅이 | 제 구비 | add 3,000 나쵸 se (메인메뉴 + 나쵸 + 캔용뢰 | | BEARS (TACC |) |
| CHICKEN TACO 시킨 타코 pros | 9,000 | CHICKEN BURRITO 처킨 부리또 | 9,500 | CHICKEN BURRITO BOWL 차건 부리또 보용 | 10,500 |
| BEEF TACO 비프 타코 から | 10.000 | BEEF BURRITO (1) 的基本可是 | 10.500 | BEEF BURRITO BOWL | 11,500 |
| CHILI SAUSAGE TACO N리소세시 타코 IPCS AVOCADA TACO | 11,000 11,500 | AVOCADO BURRITO 아보카도 부리또 | 12,000 | AVOCADO BURRITO BOWL 아보카도 부리또 보용 | 12,000 |
| 아보카도 타코 arcs FISH TACO 파쉬 타코 arcs | 12,000 | FISH BURRITO | 12.500 | PULLED PORK BURRITO BOWL 플트포크 부리또 보용 | 12,000 |
| PULLED PORK TACO 플트로크 타고 PCS | 12.000 | PULLED PORK BURRITO WENT POR SHRIMP BURRITO | 12 ^{.500} | SHRIMP BURRITO BOWL 이렇프 부리또 보용 | 13,500 |
| SHRIMP TACO | 12.500 | 쉬림프 부리또 | | ALON GIVEN DAY OF THE PARTY OF | TTO A |
| 土스추천 치를레마요, 헛소스, 파일드살사, 배르제상사, | 사위크림, 자파빨리 은 카운터로 | 소스우인 윌리몬카르네, 핫소스, 마일드살 add 3,000 나쵸 set | - | <u>소스추천</u> 형리온카르네, 과파물리, 5 BEARS () TACC | |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구분 | 상호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연락처 | 비고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상 기와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 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별첨] 수령확인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확인서1: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설명을 듣고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크□)

확인서2: 가맹계약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서를 충분한설명을 듣고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 크□)

확인서3: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 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창업 예정지 인근 10개 매장의 현황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체 크□)

확인서4: 비밀 유지 확약

본인은 귀사의 정보공개서 등을 수령하며,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본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귀사에게 수령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의 자료를 신속하게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제 공 일 자 : | | |
|-----------|------|-----------|
| 수 령 장 소 : | | |
| 수령자 주소 : | | |
| 전 화 번 호 : | 010- | |
| 수 령 자 : | | (서명 또는 인) |
| 가 맹 본 부 :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인) |

※ 가맹본부란을 제외한 이외의 기재 란은 반드시 가맹점주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